

의안번호	제936호
의결 연월일	2025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지역문화진흥 조례안

발의자	안치영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25년 4월 11일

충청북도 지역문화진흥 조례안

(안치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936
----------	-----

발의연월일 : 2025년 4월 11일

발 의 자 : 안치영, 최정훈, 안지윤,
김국기, 박재주, 오영탁,
조성태

1. 제안이유

- 2014년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되어 실시된 이후, 2021년, 2022년 5차례에 걸쳐 개정된바, 「지역문화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 도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도민들의 자발적인 지역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특색 있는 고유의 도 문화를 발전시키며 지역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지역문화, 문화예술, 문화도시, 문화지구,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 지역문화진흥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 및 예산지원을 규정함(안 제6조)
-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제15조)
-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
-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시·군, 지역문화 관련 기관·단체 및 기업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7조)

- 지역문화진흥에 기여한 기관·단체 및 개인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8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역문화진흥법」,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 나. 관련부서 :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산업과
- 다.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 라. 조례안예고 : 예고대상(의회 홈페이지 게시 예정)

충청북도 지역문화진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충청북도의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문화”란 「지역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3. “문화도시”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도시를 말한다.
4. “문화지구”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지구를 말한다.
5. “지역문화전문인력”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자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문화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충청북도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제7조제1항에 따른 충청북도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시행·평가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문화적 특성 및 실정에 맞는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개발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시행계획 추진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
4. 문화환경 취약지역 지원 등 문화격차 해소에 필요한 사항
5.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문화가 있는 날 행사 추진 등 문화향유 확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사업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범도민 지역문화 활성화 사업
2.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보급
3. 문화도시 및 문화지구 육성
4.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
5. 지역문화 발전 및 정체성 확립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충청북도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담당 업무 관련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충청북도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
2. 지역문화진흥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도지사가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해당 안전에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제9조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심의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하여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회의를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지역문화진흥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14조(수당 등)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 도지사는 법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 사업에 필요한 경비
2.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경비

제1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시·군, 지역문화 관련 기관·단체 및 기업 등과 교류, 협의체 구성 등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8조(포상) 도지사는 지역문화진흥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 등에게 「충청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발취

□ 지역문화진흥법 [법률 제18780호, 2022. 1. 1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문화”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문화예술·생활문화·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2.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3.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4.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을 말한다.
5. “생활문화시설”이란 생활문화가 직접적·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6. “문화도시”란 문화예술·문화산업·관광·전통·역사·영상 등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를 말한다.
7. “문화지구”란 문화시설과 문화업종의 육성, 특성화된 문화예술 활동의 활성화 또는 문화자원과 문화적 특성의 보존을 위하여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지구를 말한다.

8. “지역문화전문인력”이란 지역문화의 기획·개발·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제6조의2(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① 지역문화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이하 “협력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시·도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이하 “시·도 협력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력위원회와 시·도 협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문화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3.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4.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진흥 자문사업단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지역문화 관련 기관 및 단체 간의 협력·연계 및 교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협력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협력위원회의 위원장 1명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되고 다른 위원장 1명은 제1호의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지역문화진흥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문화진흥과 관련한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그 밖에 협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시·도 협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한다.

제10조(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문화진흥 관련 연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를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2(지역문화 고유원형 보존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의 고유한 원형을 우선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에 대한 기록·조사 및 연구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312호, 2024. 3. 19.]

제4조(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도지사는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지역문화진흥을 위

한 시행계획(이하 “시·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시·도지사는 시·도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할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③ 시·도지사가 시·도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도 시행계획을 반영하여 해당 지역의 실정에 맞게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군·구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⑤ 시장·군수·구청장이 시·군·구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 시행계획 및 시·군·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지역문화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⑦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지역의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기본방향
 2. 해당 지역의 문화적 특성 및 실정에 맞는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개발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시행계획 추진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財源)에 관한 사항
 4. 문화환경 취약지역 지원 등 문화격차 해소에 필요한 사항
 5.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6.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충청북도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 문화를 발전시키며 지역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

2. 비용 발생요인

- 충청북도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비용 발생

3. 관련조문

- 안 제5조(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 수립)
 - 충청북도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 수립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1) 추계기간 :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으로 함
- 2) 충청북도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 수립

나. 추계결과

1) 산출과정

-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 수립 용역 : 30,000천원 (2025년 추진, 5년마다 실시)
 -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 수립 용역 1식 x 30,000천원 x 1회 = 30,000천원

- 2) 산출결과 : 2025년부터 향후 5년간 30,000천원 소요

다. 재원조달방안 : 도비 100%

5. 연도별 비용추계서(세출)

(단위: 천원)

구 분	계	1차년도 (2025년)	2차년도 (2026년)	3차년도 (2027년)	4차년도 (2028년)	5차년도 (2029년)
계	60,000	30,000				
충청북도 지역문화 진흥 시행계획 용역	30,000	30,000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5년)	2차년도 (2026년)	3차년도 (2027년)	4차년도 (2028년)	5차년도 (2029년)	계
세 입							
	-						
세 출		30,000					30,000
	충청북도 지역문화 진흥 시행계획 용역	30,000					30,000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특별회계							
구·군비							
기 타							